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종합감사 -

2019. 9. .

3. 처분요구일람표

1. 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4
2. 수탁수수료 징수 부적정 (통보)	6
3. 기금 운영 부적정 (주의)	9
4.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부적정 (시정)	12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4
6.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 (주의)	17
7. 하자구분곤란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9
8. □□□ □□□□ 등재 추진 학술용역 국외여행 부적정 (주의)	22
9. ○○○○ **조사사업 부적정 (주의)	25
10. 해외문화유적 답사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30
11. 연구직 논문 등 평가 부적정 (통보)	32
12. 연구원 관리자 운영 부적정 (통보)	35
13. 직원 음주운전 사실 확인 소홀 (권고)	37
14. 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미이행 등 (주의 및 시정)	39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보수규정」 제37조의2에 따르면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최고등급의 지급률은 120%, 최저등급의 지급률은 0%로 결정하고, 최저등급평가를 받은 하위 10% 인원은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9. 5.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지 받고 아래〔표〕와 같이 정당한 최저 등급(C등급) 인원을 6명으로 배분하지 않고 3명으로 인원비율을 산정한 뒤 같은 해 11. 30. 성과급 146,330천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7년 경영평가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최저 등급(C등급) 인원을

5명으로 배분하지 않고 3명으로 인원비율을 산정한 뒤 같은 해 10. 13. 성과급 105,046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성과급을 지급받지 말아야할 5명이 B등급으로 산정되어 성과급 5,000천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표] 성과급 등급별 인원 비율 현황

구 분	총 원	최고등급 (S등급)	최하등급(C등급)		비 고
			실제 집행한 산정 인원	정당한 산정 인원	
2016년	52명	10명	3명	6명	△3명
2017년	46명	9명	3명	5명	△2명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등급별 인원비율을 위반하여 최하등급 인원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에게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수탁수수료 징수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I. 예산편성의 원칙 2.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대행사업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위탁비용 청구 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수탁사업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위탁사업비의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고 사업비의 10%에서 최저 5%의 수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수탁사업에 대한 처리방법 및 절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뒤 적절한 대행수수료를 징수하고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최근 4년간 문화재관련 대행사업 19건, 4,875백만 원을 대행하면서도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부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비의 1.3%인 61백만 원의 수수료만 징수한 채 사업을 대행하였다.

또한, 2016년 ★★시로부터 수탁받은 ○○○ 실시설계 사업은 사업비 2,700백만 원의 0.8%인 22백만 원을 징수하거나 ●●로부터 위탁받은 ◎◎◎◎ 일제조사 등 7건은 수수료 징수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대항사업수행을 위해 연구원 인력과 장비, 사무관리 등을 하고서도 적정한 수수료를 세입조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수탁사업의 5%를 징수하였을 경우와 비교 182,498천 원의 세입손실이 추정된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수탁사업에 대한 처리방법 및 절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정한 수익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금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구,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 및 지원조례」(2019. 5.30. 조례 제41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원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설치 및 운영세칙」¹⁾ 제4조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사용계획(규모, 방법 등)과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원장이 수립하되 사용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5. 12. 17. 2015년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연구원 적립금 70억 원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연간 이자발생액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과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는 공익성 사업 투자에 한해 기금을 운영하도록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런 뒤 2016. 3. 30.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통해 기금운영 수입 및 지출 예산서를 편성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당초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 그 사용목적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운용코자 할 때에는 ①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뒤 그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② 기금변경운용계획을 수립,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③ 기금예산편성을 했어야 한다.

1) 같은 세칙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가능토록 규정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매출하락 등 경영악화를 사유로 위 기금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연구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키로 하면서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 수립 등의 절차 없이 2017.12.(날짜미상) 이사회 서류 결재로 대신 하여 기금조성액 70억 원 중 20억 원을 전출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런 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12.에도 이사회 서류 결재로 대신하여 기금조성액 25억 원을 전출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금조성액 원금이 감소되는데도 도와 사전협의 없이 기금조성액 70억 원 중 45억 원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앞으로는 기금조성액 원금이 감소할 경우 경상북도 지도·감독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없이 이사회 서류로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회계규정」 부칙 제3항과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71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장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 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회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회계업무담당팀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2019. 7. 12. 현재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잔액은 9,285,326원이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개원 이래 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은 물론 반환청구, 이자 세입조치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계좌내 잔액의 정당한 채권자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 잔액에 대한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국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6,052,130원은 시·발굴조사 현장 근로자 등 109명에게 환급되어야 할 건강·요양보험료로 확인되었고, 2,536,606원은 채권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잔액 현황

과목별	채권자	금 액	비 고
		9,285,326	
국민연금보험료	*****공단	8,100	2019. 8.10. 납부예정
건강·연금보험료 환급액	◇◇◇ 외 109명	6,052,130	
소 득 세	◆◆세무서 외	625,940	2019. 8.10. 납부예정
지방소득세	□□시청	62,550	2019. 8.10. 납부예정
채권자 불분명	-	2,536,606	환급금, 이자 등 추정

그 결과 정당한 채권자들이 제때 보험료 6,052,130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 불분명 채무액 2,536,606원은 정당한 채권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회계 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 ①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액 2,536,606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자에 환급하거나 「회계규정」 부칙 제3항과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관련자에게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지침」(행정안전부) II.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3.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직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직원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축의·부의금품은 출연기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 공통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1] 연도별 집행 내역과 같이 ●●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집행한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726천 원 중 85%에 해당하는 20,100천 원을 축·부의금품으로 집행하였고, ☆☆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집행한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750천 원 전액을 축·부의금품으로 집행하였다.

더욱이 ●●은 2017. 6.부터 현재까지 총 23건 1,250천 원을, ☆☆은 2017. 2.부터 현재까지 총 23건 1,150천 원을 연구원의 업무관련 범위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부서의 직원에게 축·부의금품을 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래 [표 2] 와 같이 동일한 사람에게 ●●과 ☆☆이 중복하여 축·부의금품을 2016년에 24건, 2017년에 26건, 2018년에 28건, 2019년에 14건 등 총 92건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앞으로는 기관장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업무관련 범위 밖의 기관 임·직원에게 축·부의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원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²⁾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절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칠곡 [칠곡군청] 정밀실측 및 3D영상제작 용역을 (주) [칠곡군청] (이하 계약상대자)와 2017. 9. 22. 계약금액 352,406천 원에 계약체결(계약기간 : 2017. 9.22.~2017.12.21. 90일간)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예정일인 2017. 12. 21. 준공계를 제출받고 검사·검수하였으나 도면, 영상, 모형, 보고서 등 모든 분야에 보완사항이 있어 같은 해 12. 27.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에도 2018. 1. 23. 또다시 도면과 모형제작이 미비하여 보완통보를 하는 등 계약이행을 지체하다 같은 해 2. 9. 최종 준공검사 합격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부과시 지체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일(2017.12.27.)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2018. 2. 9.)까지의

2) 용역은 1,000분의 1.3

기간, 45일을 지체일수로 계산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4. 17. 계약상대자에 지연배상금 부과를 하면서 위 규정과는 다르게 지체일수를 45일로 하지 않고 17일로 과소하게 산정한 뒤 1일당 배상금액 458,127원을 곱하여 7,788,150원만을 부과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지연배상금 20,615,710원³⁾ 보다 12,827,560원이 과소 부과되었고, 그 금액만큼 연구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일수 산정을 철저히 하여 지연배상금이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에게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연일수 45일 × 1일당 배상금 458,127원 = 20,615,715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구분곤란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관 계 부 서	조사연구실·☆☆☆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가목 규정에 따르면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를 접합하는 경우에 한하고, 토공·준설과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에 따르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일반사항 및 기술사항(공사규모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평가하여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5. 11. 26. [공해지] 공해지 발굴조사(3차) 복구공사를 (주)[공해지]과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금액 30,821천 원(변경 70,325천 원)에 계약체결(계약기간 : 하고 2017. 5.30. 준공처리하였다.

1. [공해지] 공해지 발굴조사(1·2차) 복구공사 수의계약

위 관서 조사연구실에서는 [공해지] 공해지 발굴조사(1·2차) 복구공사 계약상

대자 선정을 위해 2017. 4. 21. 경영지원팀에 계약의뢰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주요 공종이 발굴조사지에 대한 되메우기 등 토공사 단일 공종으로 위 규정에 따라 하자책임 구분 곤란 사유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아래 [그림]과 같이 3차 복구공사 현장과 1·2차 복구공사 현장은 일부 연접할 뿐 하자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그림] 공해지 발굴조사(1·2차) 복구공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21. 하자책임 구분곤란을 사유로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5. 30. 계약금액 81,840천 원에 (주) [그림]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수 없는 (주) [그림]에게 그 금액만큼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2. 칠곡 [그림] 탐방로 우선구간 조성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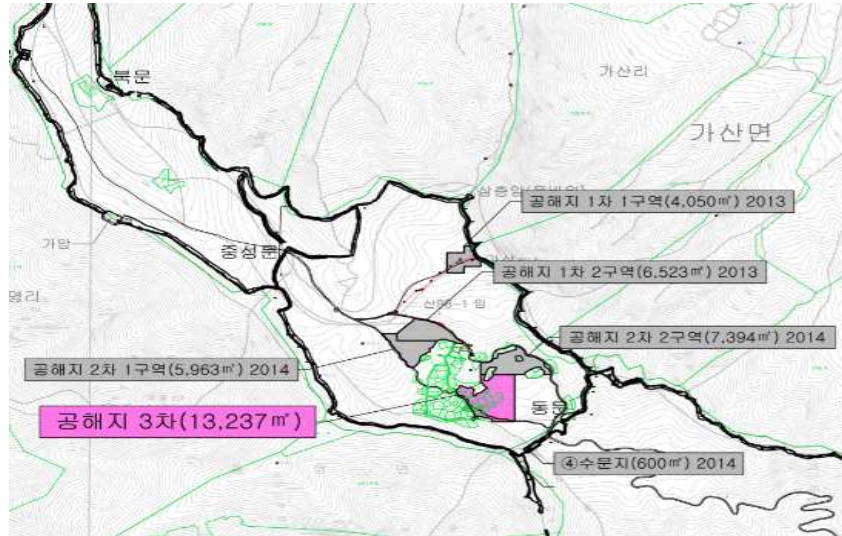
위 관서 조사연구실에서는 [그림] 탐방로 우선구간 조성공사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2017. 11.(날짜미상) 경영지원팀에 계약의뢰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기존 발굴조사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로 발굴조사(1·2·3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지도 않는 등 위 규정에 따라 하자책임 구분 곤란 사유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위 관서에서는 [그림] 탐방로 우선구간 조성공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9. 하자책임 구분곤란을 사유로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2. 4. 계약금액 87,745천 원에 (주) [그림]과 또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수 없는 (주) [그림]에게 그 금액만큼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그림] [그림] 수의계약 현장



계약건명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계약금액(최초)	계약방법
공해지 발굴조사(3차) 복구공사	2015.11.26.	2015.11.26.~5.30.	30,821천 원	전자입찰
공해지 발굴조사(1·2차) 복구공사	2017. 5.30.	2017. 5.30.~9.25.	81,840천 원	1인수의
철곡 탐방로 우선구간 조성공사	2017.12. 4.	2017.12. 4.~12.28.	87,745천 원	1인수의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토공사 등 공사계약을 수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에게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등재 추진 학술용역 국외여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위 관서에서는 2016. 10. 4. &&시와 □□□ 불교유적지구 □□□□등재 학술
용역계약(계약금액 : 89,000천 원, 기간 : 2016.11. 4.~2018.12.20.)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국외여행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6조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III. 주요항목별 편성기준 2.경비 (7)기타에 따르면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절감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 수행 연구진은 고고분야,
미술사 분야, 역사 분야, 보존과학 분야, 고건축 분야, □□□□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술 용역의 총괄은 해당 분야의 학식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실에 근무하는 A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고, A와
연구원 등 3명의 국외여비를 6,306천 원으로 산출하여 2016. 11. 4. 과업수행계획
서 등 착수계를 &&시에 제출, 같은 날 승인을 받았다.

또한, 위 관서 내부결재 문서 「문화유산 답사계획」(2017. 7.)에 따르면 답사자는
답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답사의 성과물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7.(날짜 미상) 당초 &&시에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와는 다르게 여행경비를 18,620천 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모자라 연구원도 아닌 ㉠㉠실장 B를 답사자로 편성, 아래 [표] 와 같이 해외 문화 유산 답사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시행하였다.

[표] 해외문화 국외여행 현황

일 정	장 소	여 행 경 비		출 장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2017. 7.25.~7.29. (4박5일)	일본(기이산지, 후지산 등)	6,306천 원	18,620천 원	책임연구원 1, 연구원 2	㉠㉠실장 연구원 7(외부 6)

더욱이 외부연구진 C와 D를 제외한 위 B 등 나머지 6명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19. 7. 현재까지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용역 전체예산 89,000천 원의 20%에 달하는 18,620천 원의 경비를 국외여비로 집행하고도 최종보고서에 답사결과가 2쪽 정도 반영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과업수행계획서와 다르게 여행경비를 증액하거나 연구원이 아닌 자를 학술용역 공무국외여행에 편성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을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에게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조사사업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경상북도 ☐☐과로부터 ○○○○ **조사사업을 위탁받아 2016. 4.부터 2017. 12.까지 도내 101개소 **에 대한 위치, 현황과악 등 현장 확인과 관련 문헌자료 조사와 함께 **조사 보고서를 제작·배부하였다.

[표 1] ○○○○ **조사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단 구성
1차 **조사	50,000	2016. 4.25. ~ 2017. 3.31.	62개소 **	9명 (단장 1, 책임연구원 1, 조사원 7)
2차 **조사	70,000	2017. 7. 5. ~ 2017.12.31.	39개소 **	5명 (단장 1, 책임연구원 1, 조사원 3)

1. 조사단원이 아닌 소속직원의 출장여비 지급 관련

연구원의 1차 및 2차 **조사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에 대해 조사단장, 책임연구원 및 조사원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조사단의 조사인력 중 조사원(1명)과 책임연구원이 변경되자 연구원에서는 조사단 변경 요청 공문을 경상북도 ☐☐과에 각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연구원은 조사단의 조사인력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사인력을 임의로 추가·변경하여 실태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조사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관련한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조사와 관련한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조사단의 조사인력이 아닌 소속직원을 임의로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E에 **조사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를 8회 지급하는 등 총 4명의 28회 출장에 대해 계 1,691천 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조사 보고서 제작·배부 및 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지침」(행정안전부) II.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5. 기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쇄비,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쇄물의 경우 인쇄 전에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생부수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조사 보고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취지에 따라 배부처, 배부수량 등을 고려한 제작·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 부수를 최소화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고서 배부 시에는 수불대장 작성 등을 통한 수불관리와 보관 잔량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조사 보고서를 제작하면서 구체적인 제작·배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당초 500부를 제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500부 많은 1,000부를 과다 제작하였다.

그런 뒤 배부한 126부에 대해서는 수불대장 기록 등을 하지 않아 배부처를 알 수 없고 제작한 보고서의 20%에 해당하는 208부는 활용계획도 없이 배부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다.

그 결과, **조사 보고서가 배부수량보다 과다하게 제작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의 분실 등이 우려된다.

3. **조사 보고서 인쇄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조사 보고서 간행을 위한 인쇄용역에 대해 여성기업과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조사 보고서 인쇄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실례가격 등 비교 검토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시 일반적인 견적가격 대비 계약금액 비율 수준(87.74%)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감사기간 중 **조사 보고서 인쇄비용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한 결과 당초 계약한 37,980천 원 보다 26% 적은 28,000천 원 정도로 조사되어 10,000천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조사 보고서 인쇄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상대자 (대표)	견적가격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쇄부수	비 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앞으로는 조사단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거나 보고서 등 인쇄 계약 시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견적가격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작성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해외문화유적 답사 대상자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위 관서에서는 2018. 1. 31. ~ 2. 3.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문화유적답사를 계획하고 소속 직원 15명이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연구원 전액 예산 19,200천 원으로 답사하였다.

「해외문화유적지 답사 운영세칙」Ⅱ. 적용범위 제2호에 의하면 신규입사 후 1년 미만인 자,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세칙 Ⅲ. 우선순위에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한자, 최종 답사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자, 근무성적우수자 순으로 답사인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문화유적답사 인원을 편성할 때 입사 경력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은 편성에서 제외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년도 해외문화유적답사를 시행하면서 입사경력이 30일도 지나지 않는 발굴조사팀 소속 F, G 2명을 답사인원에 편성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시·발굴사업이 위축 등 경영난에도 소속 직원 2명이 부당하게 해외문화유적 답사를 하였고, 그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연구원장은

앞으로는 입사 경력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해외문화유적지 답사인원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구직 논문 등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원 직원은 4년에 1편 이상 논문을 학회지 등에 발표하여야 하고(1년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승진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직 논문발표 관련 세부지침」 연구직 논문발표 인정기준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직급별로 인정논문을 차등화하고 있다.

[표] 연구직 논문발표 인정기준

직 급	인정논문
책임연구원	①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학회지의 단독논문게재 또는 학술대회 학술단독 논문발표 ② 해당기간 학위논문 취득 ③ 단독저서 출판 ④ 연구원 내부 연구논문집에 게재된 우수논문(90점이상) ⑤ 신문,잡지 단독기고 2편
선임연구원	① 기타 비등재지 학회지 단독논문게재 또는 학술대회 단독학술논문발표 ② 연구원 내부 연구논문집에 게재된 단독논문(70점이상) ③ 공동저서 출판 ④ 신문, 잡지 및 원내 소식지 특별기고 단독기고 2편
연구원	① 연구원 내부 연구논문집 단독게재 ② 원내 소식지 특별기고 단독기고 ③ 원내 소식지 유적 및 문화재 소개 코너 단독기고 2편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위 논문발표 인정기준에 따라 연구논문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해당 직급의 인정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논문발표자에 대한 학술연구활동 지원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1. 세부지침의 불합리성

그런데, 위 관서에는 2015. 6. 연구직 논문발표 관련 세부지침을 수립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 논문의 범위를 원내 소식지 또는 신문·잡지 특별기고나 유적 및 문화재소개코너 등을 포함시키는 등 논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015년 이후 연구직 논문 43편 중 순수 학위논문, 연구논문집 등은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6편은 연구원 소식지 유적 및 문화재 소개 등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연구원 내부 연구논문집인 학술총서는 2016. 12.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을 마지막으로 발간을 중지하였고, 원내 소식지 또한 2018. 2.을 마지막으로 발간을 중지하여 연구원 직급은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유형이 아예 없는 등 연구직 논문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원의 경우 연구원 내부 연구논문집에 공동게재를 할 경우 등에는 논문인정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직급별 인정논문 인정범위도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연구원 내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급(대학 부교수 수준) 인력은 단 한명도 없어 문화재 관련 학술용역 낙찰이 불가하고, 수입감소, 경영악화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연구직 논문발표 인정범위 관련

한편 2017. 11. 21. ☐☐실 소속 연구원이 지역 미술가의 전시회 팸플렛 글 4편을 연구직 논문 평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미술전시회 팸플렛 글 4편은 지역 현대미술작가 4명의 작품설명서로 연구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학술활동일 뿐이어서 위 논문발표 인정기준 범위 밖이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11. 21. 연구직 논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전시회 팸플렛 글 4편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외에도 동일 연구원이 2018. 10. 16. 지역 작가의 작품설명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장은

연구직 논문 게재 등 학술활동을 장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논문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구원 관리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위 관서에서는 공사금액 809,688천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520.61㎡, 지상 2층 부속사(관리창고, 다목적 식당, 관리사 숙소)를 건립하여 2015. 12. 18.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리사 관리·운영계획」(2016. 1.) II. 운용방향에 따르면 관리사 입주자는 업무시간외 연구원의 시설유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사용료는 무상임대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계획 III. 운용계획 3항(입주자 선정 및 임무)에 따르면 연구원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 유사시 시설 응급조치 및 복구 능력이 있는 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시설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 우선, 근무시간외(공휴일 포함) 연구원 시설의 보호·감시 기능 수행, 단, 영천 지역을 벗어날 경우 사전신고, ☆☆☆는 근무자 대체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전체 직원들에게 입주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로 결정된 자에게 근무시간외(공휴일 포함)에 연구원 시설의 보호·감시 방법을 제시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입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1. 입주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고 현재 입주자만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 18. 관리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날 관리사 입주 허가를 하였다.

그런 뒤 입주기간(2016. 2. 1.~2019. 1. 31.)이 만료되자 또다시 연구원 직원 전체에 대한 입주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지 아니하고, 2018. 12. 위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연장 신청만 받아 같은 해 12. 19. 관리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 연장허가를 하였다.

[표] 관리사 입주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입주기간	비 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위 입주자가 영천지역을 벗어나 근무자를 대체 조치한 경우를 확인한 바, 한 번도 없었고, 연구원 시설의 보호·감시에 따른 근무일지도 없이 관리 운영계획과 다르게 필요시(설, 추석 명절, 박물관 특별전) 연구원 직원들을 별도의 일직자를 명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관리사 입주자 선정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장은

관외지역 사전신고 등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개정하고 연구원 보호·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사 운영 취지대로 관리사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권 고

제 목 직원 음주운전 사실 확인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정관 및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 제3호 및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인사규정」 제49조 규정에 따라서 적정 처분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 소속 H는 2016. 3. 18. ❖❖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징계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장은

① 연구원 임직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도록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음주운전 확인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② 관련자에게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의 및 시정요구

제 목	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미이행 등
소 관 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1. 근로자 채용 전형방법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12. 3.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계획 확정 후 모집공고를 하면서 채용일정을 누락한 채 공고를 한 뒤 전체 응시자 8명 중 J(여26세) 등 4명은 응시자격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채용공고문에 전형 일정을 알리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기준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다.

2.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 위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문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방법과 절차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붙임〕과 같이 근로자 채용공고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채용관련 일체서류를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구직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채용서류 반환 고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직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2016. 11. 10.부터 2019. 1. 3.까지 근로자채용공고 기간 중 응시자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접수한 후 불합격자 및 채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관련 서류는 파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불필요한 관련 서류를 기록물 문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응시자(불합격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근로자 채용관련 문서 기록물 미등록

「사무관리규정」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문서의 종류별 분류기호와 일련 번호로 분류하고, 결재가 있음으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부서별로 문서등록대장에 문서를 등록하고, 제30조에 따라서 문서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채용공고 계획 및 각 전형 단계별 생산된 일련의 기록물은 빠짐없이 문서를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11. 10.부터 2019. 1. 3.까지 생산된 문서를 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에 따라 문서를 매년 1회 이상 정리하여 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2016. 11. 10.부터 2017. 4. 3.까지 근로자채용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문서(공고 횟수기준 최소 18건 이상)는 감사일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문서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시험과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관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직원채용시 응시자격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응시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불필요한 관련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